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993. 8. 6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8월 2일

○ 회부일자 : 1993년 8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 93회 임시회

○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 8. 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가. 제안 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 4명의 위원은 교육위원 2명, 교육감소속 공무원 2명

○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 등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1차 연임 가능)
- 위 2년에 불구하고 교육위원은 재임기간,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
-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공직자윤리법(법률 제4566호, 1993. 6. 11)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 경우는 93. 8. 12일부터 93. 9. 11일까지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 등을 처리할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없음 "

5. 토론 요지 :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조례안